

# OSS Compliance --Organization--

1

Company	NCSOFT		
Presenter	한다솜 (CTO직속 TS팀)	Date	2019.12.2
Organization	전담 조직에서 Part-time 형태로 담당		
Number of person in charge	10명 내외 (법무팀 포함)		
Points of activities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검증		
Issues	Protex 계약 만료로 소스코드 스캔 툴과 관리 툴 모색 중 (현재는 Fossology 사용 중, SW360 검토 중) 전사 오픈소스 교육 콘텐츠 검토		
Free writing	게임 및 게임에 연동되는 기타 모듈들의 오픈소스 검증을 담당합니다. 개발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및 검증 프로세스 진행은 TS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의무사항 검토 및 기타 법무 이슈는 법무팀에서 검토합니다. 상용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할 시 구매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OSS Compliance --Organization--

2

## 1. 사내오픈소스위키

-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
- 오픈소스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 이미 고지완료한 서비스들의 라이선스 고지문 게시

The screenshot shows a Confluence page with the following details:

- Header:** Confluence, 공간 ▾, 사람, 캘린더, 만들기, ..., 검색, ?, 공유, ...
- Page Titl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 Page Content:**
  - Section 1:**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요 라이선스
  - Text:** 앞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Text:** 그렇다면 이러한 라이선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라이선스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List:**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Text:**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Text:**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 할 수 있다.
  - Text:**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 할 수 있다.
  - Text:**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 OSS Compliance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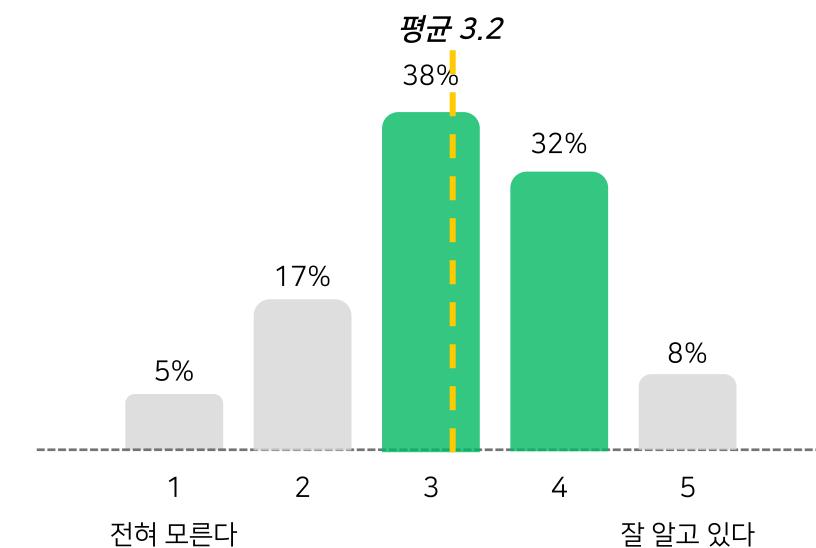
3

## 2. 전사 오픈소스 사용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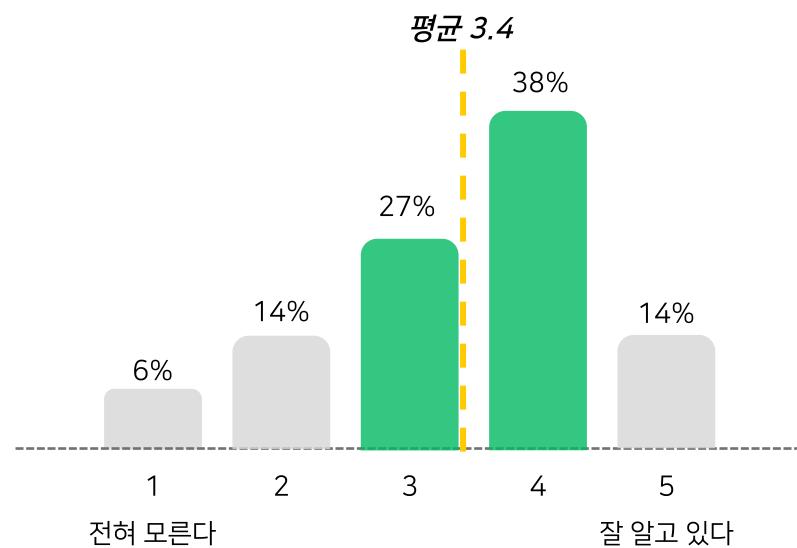
- 전사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사용 현황 및 관련 니즈를 취합하기 위해 실시
- 2019년 9월에 조사하였고, 총 215명 답변 완료

(설문 예시)

Q. 오픈소스의 주요 라이선스 별 의무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Q. 오픈소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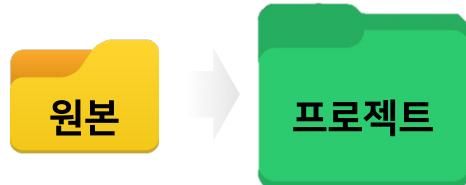


## 3. 오픈소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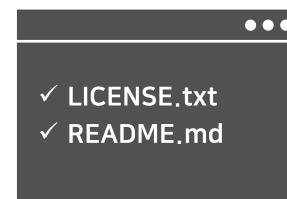
- 정규 교육 신청자들에 한해 교육 진행 중 (11월 1회 시행)
- 전사 대상 오픈소스 교육은 검토 중 for Openchain Conformance

(교육 내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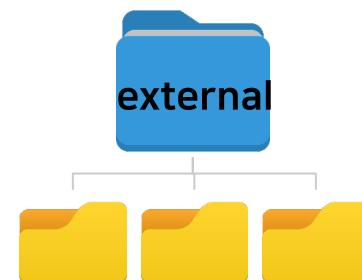
1 오픈소스 사용 시 함수만 복사하지 않고  
원본 폴더 단위로 사용해주세요.



2 오픈소스 프로젝트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LICENSE, README 파일은 포함해주세요.



3 오픈소스 폴더들은  
가급적 같은 폴더 하위에 모아주세요.  
(external 등과 같은 폴더로)



## 4. 전사오픈소스 검증 사례 공유

- 오픈소스를 검증하면서 검토했던 사례들을 취합하여 전사공유
- 검증했던 사례를 정리하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기도 함

(사례 예시)

사용하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해보니  
LGPL 2.1인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LGPL은 원본을 수정 사용하지 않고 Dynamic Linking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일부 오픈소스는 Static Linking을 하더라도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Exception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라이선스 조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ception 조항

Libwebsockets and included programs are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 2.1, with the following exceptions:

1) Any reference, whether in these modifications or in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2.1, to this License, these terms, the GNU Lesser Public Licens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 or any similar reference shall refer to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2.1 as modified by these paragraphs 1) through 4).

2) Static linking of programs with the libwebsockets library does not constitute a derivative work and does not require the author to provide source code for the program, use the shared libwebsockets libraries, or link their program against a user-supplied version of libwebsockets.

If you link the program to a modified version of libwebsockets, then the changes to libwebsockets must be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e LGPL in sections 1, 2, and 4.

3) You do not have to provide a copy of the libwebsockets license with programs that are linked to the libwebsockets library, nor do you have to identify the libwebsockets license in your program or documentation as required by section 6 of the LGPL.

However, programs must still identify their use of libwebsockets. The following example statement can be included in user documentation to satisfy this requirement: